대학설치기준령 대학실험 · 실습설비기준에 대한 특집을 제안하며

문 창 호
정회원,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평소 교육부 대학설치기준령 대학실험 · 실습설비기준(이하 기준령)에서 건축(공)학과(이하 건축과)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만 막연히 생각해 왔다. 얼마전 교내에서 기자재 예산을 학과별로 배분하는 일이 있었다. 배분원칙을 정하기 위한 장시간의 여러가지 토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학과별로 기준령의 합계금액비례로 배분하게 되었다. 건축과의 기준령을 들여다보니 환경, 구조 및 재료분야는 부족하나마 그런대로 목록을 갖고 있으나, 설계나 의장분야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1994년 건축학회에서 발간한 건축교육백서를 보아도 교육 ·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준령의 건축과의 실험 · 실습설비(필수설비+권장설비) 합계금액은 2억8천만원 정도이며, 공과대학내 다른 학과에 비하여 최고 1/5에서 최저 1/2 정도로 현격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표 참조). 기준령의 건축과 부분 자체가 내용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부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과는 공과대학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축

표 1. 학과별 기준령의 합계금액

학 과	건 축	전 기	기 계	화 학	환 경
기준금액(천원)	281,470	908,180	1,361,118	1,208,540	664,692
비 율	1.00	3.23	4.84	4.29	2.36

분야를 보는 사회의 시각이 곱지 못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건축 교육과 연구에 투자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면 건축분야는 영원히 낙후된 분야로서 학계나 산업계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기준령이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기준령 제정 당시의 상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탓하고 싶지도 않다. UR타결로 인하여 교육 및 기술 시장의 개방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이라도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여 전공분야별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험 · 실습설비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워크샵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부 기준령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부 기준령을 주제로 하여 건축학회지의 특집을 꾸며주기를 기대한다. 回